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년월일 : 2011. 10. 12

발 의 자 : 차재홍위원 외 4인

1. 제안이유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2011.7.14 공포)이 일부개정 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 함(제19조의7제1항)
- 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함(제19조의7제2항)
- 다.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 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19조의7제3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개정된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문상의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제1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수반되는 예산 없음

6. 기타사항 :

- 가.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5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0조제3항 본문 중 “기간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의2 중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65조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2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간행물 기타”를 “간행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6조 중 “관계공무원 기타”를 “관계공무원,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9조제2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의3(심사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로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의6(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등 기타의 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19조의3(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

제19조의6(위원회의 제안) ① -----

----- 그 밖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
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
하 이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 문구 · 숫자 <u>기타</u> 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정리) ----- ----- ----- <u>그 밖</u> ----- ----- -----.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u>의하여</u>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 -- <u>따라</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3. (생 략) 14. <u>기타</u>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그 밖에</u> -----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u>기타</u>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u>그 밖의</u> ----- ----- -----

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
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
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
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 ⑤ (생략)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
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5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로 공
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
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
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③ ----- 따라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그 밖에 -----
-----.

제55조(공청회) ① -----
----- 전문지식이 필요한 -----

-----.

<p>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u>기타</u>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 ----- --- <u>그 밖의</u> ----- ----- -.</p>
<p>③ · ④ (생 략)</p> <p>⑤ <u>기타</u>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그 밖에</u> ----- ----- -----.</p>
<p>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 <u>그 밖에</u> ----- ----- -----.</p>
<p>② · ③ (생 략)</p> <p>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 ----- -----.</p>
<p>1. ~ 10. (생 략)</p> <p>11. <u>기타</u>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그 밖에</u> ----- ----- -----</p>
<p>② · ③ (생 략)</p> <p>제59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u>기타</u> 비밀참고자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9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 <u>그 밖의</u> -----</p>

<p>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p>	<p>----- ----- -----. ----- -----.</p>
<p>제60조(예산안 심의) ① · ② (생략)</p>	<p>제60조(예산안 심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u>기간내</u>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③ ----- ----- ----- <u>기간</u>----- ----- -----.</p>
<p>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 ----- -- <u>제60조부터 제64조까지</u>----- -----.</p>
<p>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답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p>	<p>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u> ----- -----. ----- ----- -----.</p>

<p>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u>해당위원회</u>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 해당 위 원회 -----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p>	<p>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u>기간내</u>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 -----. -- <u>기간</u>-----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생략)</p>	<p>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기타</u>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p>	<p>② <u>그 밖에</u> ----- ----- -----.</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u>의거</u>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u>따른</u> ----- ----- ----- ----- -----. -----.</p>

<p>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u>기타</u>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 -- <u>그 밖의</u> ----- ----- ----- -----. -----.</p>
<p>제73조(경호) ① · ② (생 략) ③ <u>기타</u>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p>	<p>제73조(경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에</u> ----- -----.</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 -----. -----.</p>
<p>1. (생 략)</p> <p>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u>간행물</u> <u>기타</u>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p> <p>3. ~ 5. (생 략)</p> <p>6. <u>기타</u>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p> <p>② · ③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u>간행물</u>, <u>그 밖의</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u>관계공무원</u> <u>기타</u>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u>관계공무원</u>, <u>그 밖에</u> ----- ----- -----.</p>

제77조(방청) ① (생 략)

② 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③ ~ ⑤ (생 략)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

제77조(방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라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 따른 -----

-----.

② ----- 따른 -----

----- 따른 -----

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
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14] [시행일 2011. 10. 15]

국회법

(법률 제10652호, 2011.5.19 일부개정, 2011. 5. 19시행)

-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 - 현행 적용 법규

2012. 5. 30 시행 예정 법규

-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일 : 2012.5.30] 제82조의2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시행 2000. 6.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462호, 2000. 6.30, 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치법규(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입법예고문안을 준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시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구청장은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가 구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